성주군 농촌보육·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7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성주군 농촌보육·정보센터를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 센터장을 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(안 제5조)
나. 기타 용어 정비 등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- 「여성농업인육성법」 제13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3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9772(2017.10.31.)]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주민복지과-63541(2017.11.24.)]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7.11.6. ~ 2017.11.27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농촌보육·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농촌보육·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장 제10조”를 “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”로, “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3조에 따라”로, “농촌보육·정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”를 “농촌보육·정보센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센터”를 “농촌보육·정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후단 중 “상주하며 군수”를 “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,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로, “소속 센터”를 “센터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“때”를 각각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있을때”를 “있을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장 제10조, 제12조 및 「여성농어업인육성법」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・정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영유아보육법」제10조---------- 제13조에 따라 ---------- 농촌보육・정보센터----------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성주군이 설치・운영하는 센터에 대하여 적용 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---------- 농촌보육・정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--.
제3조(업무) 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. 1. 어린이집 가.・나. (생 략) 다. 기타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. (생 략)	제3조(업무) ---------- 각 호----------. 1. ------ 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 다. 그 밖에 ----------
제4조(이용대상)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생 략)	제4조(이용대상) ---------- 각 호-----. 1. (현행과 같음)
2. 정보시설 : 초・중・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이 있는 농촌지역주민으로한다.	2. ---------- 그 밖에 ----------

제5조(센터 종사자) ①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, 어린이집에는 원장(보육교사와 겸임)과 취사원을 둔다. 센터장은 상주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 종사자(이하 “종사자”라 한다)를 지휘·감독한다.	제5조(센터 종사자) ①----------. ------- 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,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-- 센터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보육료 등의 수납) ① (생 략)	제6조(보육료 등의 수납) ① (현행과 같음)
②센터장 및 어린이집 원장은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자와 협의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.	②---------- 범위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탁의 해지)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	제8조(위탁의 해지) -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-----.
1.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	1. ---------- 경우
2.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	2. ---------- 경우
3.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	3. ---------- 있을 경우